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직대통령 외교관여권 발급 배제 등〉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450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39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들의 내용 비교	3
2.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 제외 검토	6
3. 그 밖의 사항	8
※ 참고자료	11

I. 제안 및 회부

1.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450호)

가.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12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2월 13일

2.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39호)

가. 제안자 : 민형배 의원 등 13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12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2월 30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용갑의원안(의안번호 제6450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음. 특히 외교관여권은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받을 수 없으며 불체포특권도 누릴 수 있는 등의 사법상 면책 특권이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2. 민형배의원안(의안번호 제7039호)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들의 내용 비교

현행법은 제4조의3¹⁾에서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박용갑의원안, 민형배의원안)들은 중대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적 신뢰를 훼손한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1) 「여권법」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 2. 전직·현직 국회의장
3. 전직·현직 대법원장 / 4.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현직 국무총리 / 6.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현행	박용갑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 ----- ----- ----- -----. <u>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탄핵결정을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등에 대하여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u>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 ----- ----- ----- -----. <u>다만,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두 개정안의 차이점은 박용갑의원안이 전직대통령뿐만 아니라 탄핵결정을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에 대해서도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탄핵 등으로 인하여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두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관련 개정안 비교 >

현행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박용갑의원안 제외대상	민형배의원안 제외대상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대통령	전직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전직 국무총리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직 국무위원	
	전직 행정각부의 장	

2.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 제외 검토

외교관여권은 원활한 공무 및 외교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일반여권과 비교하여 입국 시 사증이 면제²⁾되는 경우가 있으며,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가 적용되는 등 공무적 편의를 제공³⁾받을 수 있음.

탄핵결정 등으로 불명예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외교적 신뢰도 면에서도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임.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⁴⁾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미 서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경우에도 외교관여권을 반납한 이후 외교관여권을 재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⁵⁾, 외교관여권의 발급은 외교부장관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 헌법 질서를

2) [참고자료] 참조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권’이나 ‘면제’의 경우(신체불가침, 주거·서류·통신·재산의 불가침, 형사·민사·행정관할권 면제, 조세 면제, 관세 면제 등), 통상 해당국가에 외교단으로 공식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관여권 소지자이더라도 단기방문 및 개인적 장기체류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

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4467,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 21~22p. 참조.
: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013년 6월 11일 외교관여권을 반납한 이후 일반여권을 발급받았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여권 자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

위반한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 외교관여권이 발급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는바, 중대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적 신뢰를 훼손한 고위공직자를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전직 국가원수 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⁶⁾를 살펴보면, 미국⁷⁾, 프랑스⁸⁾, 필리핀⁹⁾은 우리나라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고, 독일, 중국, 일본 등은 명문 규정이 없이 내부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전직 국가원수 등에게 예우상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직 국가원수 등이 탄핵 등으로 해임·파면된 경우에는 예우상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나 실제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명문

6) 「전직 국가원수 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과 거부 관련 해외 사례」,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2025.1.14.

7) 미국 국무부 외무매뉴얼 제8편 제505.2조에서는 여권 인증사항(Passport Endorsements)을 규정하고 있음.
- 전직 대통령·부통령 및 그 가족에게 외교관여권(Diplomatic Passports) 또는 예우외교관여권(Courtesy Diplomatic Passports)이 발급되며, 여권소지자가 전직 대통령, 부통령, 그 가족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 또한 전직 국무장관·국무차관(Secretary and Deputy Secretary of the State of the U.S.) 및 그 가족에게 예우외교관여권(Courtesy Diplomatic Passports)가 발급되며, 해당 여권소지자가 전직 국무장관, 국무차관, 그 가족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출처: 「미국의 전직대통령 외교관여권 관련 입법례」, 국외도서관 법률정보회답, 2025.1.23.)

8) 「외교관 여권 및 소지인 인증에 관한 2012년 1월 6일 제2012-20호 법규명령(Décret n° 2012-20 du 6 janvier 2012 relatif au passeport diplomatique et à l'authentification de son titulaire)」

- 외교관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해당 여권의 수혜자 목록을 규정하는 명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관례상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정부의 구성원 등이 포함됨. 다만, 이 규정을 포함한 프랑스 모든 법령에서 고위 공무원이 탄핵으로 인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출처: 「미국의 전직대통령 외교관여권 관련 입법례」, 국외도서관 법률정보회답, 2025.1.23.)

9) 필리핀은 외교부 명령에 근거하여 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 전직 상원의장, 전직 하원의장에게 예우상 외교관여권(courtesy diplomatic passport)을 발급하고 있으며, 원래 전직 외교부 장관과 전직 대사에게도 예우상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였으나, 2019년 이들을 예우상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전직 국가원수 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과 거부 관련 해외 사례」,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2025.1.14.)

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여권 발급 규정이나 공익적 이유 등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 조항에 근거하여 외교부장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3. 그 밖의 사항

1) 전직대통령 외 포함대상 등

박용갑의원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¹¹⁾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과 탄핵결정을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을 외교관여권의 발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은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누락되고, 탄핵의 대상이 아닌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외교관여권 발급 제외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도출됨. 또한 현행법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가 아닌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이 포함되는 법령상 불일치가 발생함.

또한, 민형배의원안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형법」 제2편

10) 「전직 국가원수 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과 거부 관련 해외 사례」,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2025.1.14.

1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을 외교관여권 발급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행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인 전직 고위공직자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만을 발급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그 밖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인 전직 고위공직자들은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는 현행법 제12조¹²⁾에 따라 외교관여권뿐만 아니라 일반여권조차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여타 죄는 제외하고 내란죄와 외환죄만을 대상으로 외교관여권 발급과 결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 ④ 삭제

2) 관용여권 발급 제외

박용갑 의원안은 탄핵결정 등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외교관여권 뿐만 아니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¹³⁾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및 동반가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탄핵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등은 관용여권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 의 처

02) 6788-5266

13) 「여권법」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권법 시행령」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법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참고자료】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2024년 12월 기준)

총 체결 건수	적용 대상	국 가 명	
115개 협정 (별도 표시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외교관여권 소지자 (3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60일), 이라크(30일)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45개)	가봉, 라오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몰도바(180일 중 90일),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180일중 90일), 사이프러스,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앙골라(30일), 에콰도르(외교관: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에티오피아, 오만, 우크라이나, 이란(3개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적도기니, 조지아, 중국(30일), 카보베르데, 캄보디아(60일), 쿠웨이트(180일 중 90일),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30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30일), 파라과이, 파키스탄(3개월), 필리핀(무제한), 탄자니아 (180일 중 90일)	
	외교관·관용 · 일반여권 소지자 (67개)	아주지역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관·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32개국)	[생겐국(27개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제외)]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관·관용 180일),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불가리아 [180일 중 9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루마니아 [비생겐국] 러시아(외교관·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아일랜드, 영국, 카자흐스탄(외교관·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6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30일), 튀르키예(180일 중 90일)
		아중동지역 (6개국)	모로코, 레소토(60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타르, 튀니지(30일)

- ※ 이탈리아: 협정상외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6.15.)
- ※ 포르투갈: 협정상외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180일 중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18.7.10.)
- ※ 생겐국은 생겐협약 가입국 합산, 최종 출국일로부터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 가능
- ※ 외교관·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만 체결한 국가 중 일부는 상호주의 등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도 사증 면제 가능